

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

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 할 때, 한도제한을 해지할 때,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증빙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본에 대해서 인정됩니다.

금융거래 목적		증빙자료(예시)
금융투자 상품거래	기존 고객	自社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확인 등 * 금융투자상품은 주식, 펀드, 채권, ELS/DLS 등 투자성 상품이며,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/RP/MMF/MMW등은 제외
	신규 고객	他社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등 * 발급 기관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
	최초 고객	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및 계좌 개설 후 일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이 확인될 때까지 한도제한계좌로 편입
급여수령	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용),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계약서, 합격증,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, 명함+사원증 등	
연금수급	연금증서, 수급권자 확인서 등	
아르바이트비 수령	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표 등	
사업자금	사업관련 거래계약서, 거래처 급여 명세표 등	
모임통장	구성원 명부, 회칙, 정관, 단체 입증서류, 대표자 입증서류(등록증, 회의록 등) 등	
공과금, 관리비 등 이체	공과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, 관리비납부고지서 및 영수증, 연금보험료·건강보험료고지서, 지방세·국세고지서 및 납부확인서, 통신비 납부확인서 및 통신비 납부계좌 자동이체등록 등	
연구비	연구비 계약서,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	
해외사용	입학허가서, 비자(유학·장기체류) 등	
기존 (법인/개인사업자)	물품공급계약서(계산서), (전자)세금계산서(공급자용), 사업자등록증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납세증명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직전년도 재무제표,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등	
신설 (법인/개인사업자)	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(사업장임대차계약서,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등) 휴폐업 조회 실시 등	

※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해 예시 증빙서류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및 계좌 개설 후 일정한 금융거래목적에 맞는 거래가 확인될 때까지 한도제한계좌로 편입됩니다.